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3호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

-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을  
 ⇒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함(제2조)

### 3. 의안전문 : 따로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6.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7. 기타 참고자료 : 따로 붙임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 분의 1”을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지방자 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 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 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 20세 이상 주민 300명 ----- ---
②제1항의 감사청구 주민수 산 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삭제)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第13條의4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은 20歲이상의 住民 總數의 50分의 1의 條例가 정하는 20歲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자치부 활성화방안 권고(안)] \*행정자치부 감사 16800-31(2002. 1.23)

## 住民自治參與機會擴大를 위한 住民監查請求制活性化方案

### 1. 住民監查請求人數緩和勸告

-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인수 등 여건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 개정 권고
  -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 야기
-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도록 권고

⇒ 광역자치단체 :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 200명내외

※ 국민 감사 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령 제정

### 2. 政府合同監查 등을 통한 運營實態持續點檢·指導

- 정부합동감사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

### 3. 住民監查請求制度의 弘報強化

- 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요령 등 게재
- 일간신문, 관보, 지역신문, 시·도정 홍보지, 반상회보, 공익광고 전광판 등을 이용한 반복적 홍보전개

- 시민봉사실 등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정소에 홍보물 비치 및 활용방법 등 안내상담
  - 자치단체별 상담요원 지정운영 및 교육실시

#### 4. 透明하고 嚴正한 監查班 編成運營

- 감사시 시민단체 추천인,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켜 감사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 업무성격별로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 구축
- 감사결과 공포시 청구인, 지역주민, 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로 신뢰성 제고

#### 5. 行政事項

- 시·군에서는 본 활성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강구
- 조례개정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매월말 추진실적을 통보
- 아울러, 정부합동감사 및 우리도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예정